무배당 모아유니버셜적립보험

하나HSBC생명보험(주)

확인서

무배당 모아유니버셜적립보험을 변경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1 년 05 월 23 일

하나 HSBC 생명보험(주)

선임계리사 서 종 무

무배당 모아유니버셜적립보험
사업방법서

하나HSBC생명보험(주)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모아유니버셜적립보험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80 세 만기	월납	15 년납	만 15 ~ 65 세
		20 년납	만 15 ~ 60 세
		전기납	만 15 ~ 69 세

3.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최저 500 만원이상

4. 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보험이므로 배당금 없음

5.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의 유형

이 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한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료의 납입

(1) 기본보험료의 납입한도

보험가입금액의 2.0% ~ 5.0%

(2)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12 년(144 회 납입)까지는 기본보험료를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이하 초기 12 년간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의무납입기간”이라 하며, 144 개월 분의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를 합하여 “의무납입보험료”라 한다)

다.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1) 계약일 이후 1 개월이 지난 후부터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1 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한도로 하며,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 가입후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하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 납입가능

(2)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후 인출금액이 다시 납입되는 경우에는 다시 납입되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납입한도에서 제외한다.

(3)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1)’항의 납입한도에서 제외한다.

(4)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다.

라. 기타

(1)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소납입금액은 각각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납입기간 중 이 보험의 수금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 이상의 금액을 수시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의무납입기간 이후부터는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 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7.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 '가'항 참조)를 충당할 수 있으면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회사에서 정한 총 납입보험료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

6.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후부터 의무납입기간 중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도록 한다.

나.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는 월단위로 기산되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납입일시중지시점부터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간으로 납입일시중지 1회 신청당 12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개월수 포함)을 최고한도로 납입일시중지 신청가능횟수는 총 5회를 한도로 하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총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항에 의하여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의무납입기간은 연장된다. 다만, 연장된 의무납입기간 종료시점이 보험료 납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월대체공제액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공제액을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을 때 납입일시중지는 중단되고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는 납입하여야 한다.

마. 납입일시중지 종료일 15일 이전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한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료 납입신청서로 보험료 납입을 신청한다.

7.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

가. 월대체공제액의 정의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월대체공제액이라 한다.

나. 의무납입기간 이내의 월대체공제액

의무납입기간 이내의 월대체공제액은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납입시에 차감한다.

다.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월대체공제액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월대체공제액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한다. 이 경우 주계약보험료와 특약보험료 중 수금비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라. 의무납입기간 이후의 월대체공제액

의무납입기간 이후의 월대체공제액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주계약보험료와 특약보험료 중 수금비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8.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의무납입기간 중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한다.

나. 납입일시중지기간 및 의무납입기간 이후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그 월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한다.

9.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1) 의무납입기간 이내에서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와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을 합한 금액

(2) 납입일시중지기간 및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와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을 합한 금액

나. '가'항에 의하여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회사는 미납된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한다.

10. 감액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 개월이 지난 후 「5. 보험료납입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 한도 내에서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2) 기본보험료의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처리하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나. 보험가입금액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 개월이 지난 후 「3.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2) '(1)'항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으로 인하여 기본보험료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가'항에 따라 처리한다.

(3) '(1)'항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회사가 승낙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그 시점부터 변경된 보험가입한도를 충족하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1.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 개월이 지난 후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고, 계약후 경과기간 10 년 이내의 총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다.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출금액은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100 만원 또는 인출 당시 2 개월 분의 월대체공제액 중 큰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

라.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중도인출을 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 당시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에서 남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월대체공제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적립계약의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가'항의 공시이율은 매월 1 일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하며, 아래의 산출식에 의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1)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2) 내부지표 산출식

$$\text{내부지표}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times 100$$

(주) 1. I : 산출시점 직전 12 개월간 투자 영업수익
2. E : 산출시점 직전 12 개월간 투자 영업비용
3. A :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운용자산의 월말 잔액
A_{12} : 산출시점 직전 12 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A_0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3) 외부지표 산출식

$$\text{외부지표} = \frac{B_1 + B_2 + B_3}{3}$$

(주) 1. B_1 : 국고채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2. B_2 : 회사채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3. B_3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4. 가중이동평균이율(B_i)

$$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B_i(-3)$: 산출시점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B_i(-2)$: 산출시점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B_i(-1)$: 산출시점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5.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 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한다.
6.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한다.
7.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1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다만, 통화안정증권 1년물의 경우 '11. 5. 2 공시 시작으로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이 없어 공시 후 3개월까지는 통화안정증권 364일물과 병행 사용하여 지표금리를 산출한다.
8. 각각의 이율은 각 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 월의 당월 15일까지의 국고채 평균수익률, 회사채 평균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9. 세부 지표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나'항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나'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한다.

바. 공시이율은 계약일부터 10 년 이내에는 연복리 2.5%(일복리 0.006765%), 계약일부터 10 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2.0%(일복리 0.005426%)를 최저한도로 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른다.

13.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에 의한 전환에 관한 사항

가.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규정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14. 완납종신보험으로의 자동 전환에 관한 사항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80 세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이 계약은 종신보험으로 자동 전환된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80 세가 되는 계약해당일 7 일 이전까지 계약자가 이 계약을 완납종신보험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전환되지 아니한다.

나. 완납종신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일의 계약자적립금을 종신보험의 일시납보험료로 충당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5. 기타

가.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다. 고액보험료 할인

매월 기본보험료가 50 만원 이상 100 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보험료의 0.5%, 매월 기본보험료가 100 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이를 영수할 수 있다.

라. 선납보험료 처리

(1) 의무납입기간 중에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한하여 당월분을 포함하여 24 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한다. 이때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2)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하여 당해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3)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아니한다.